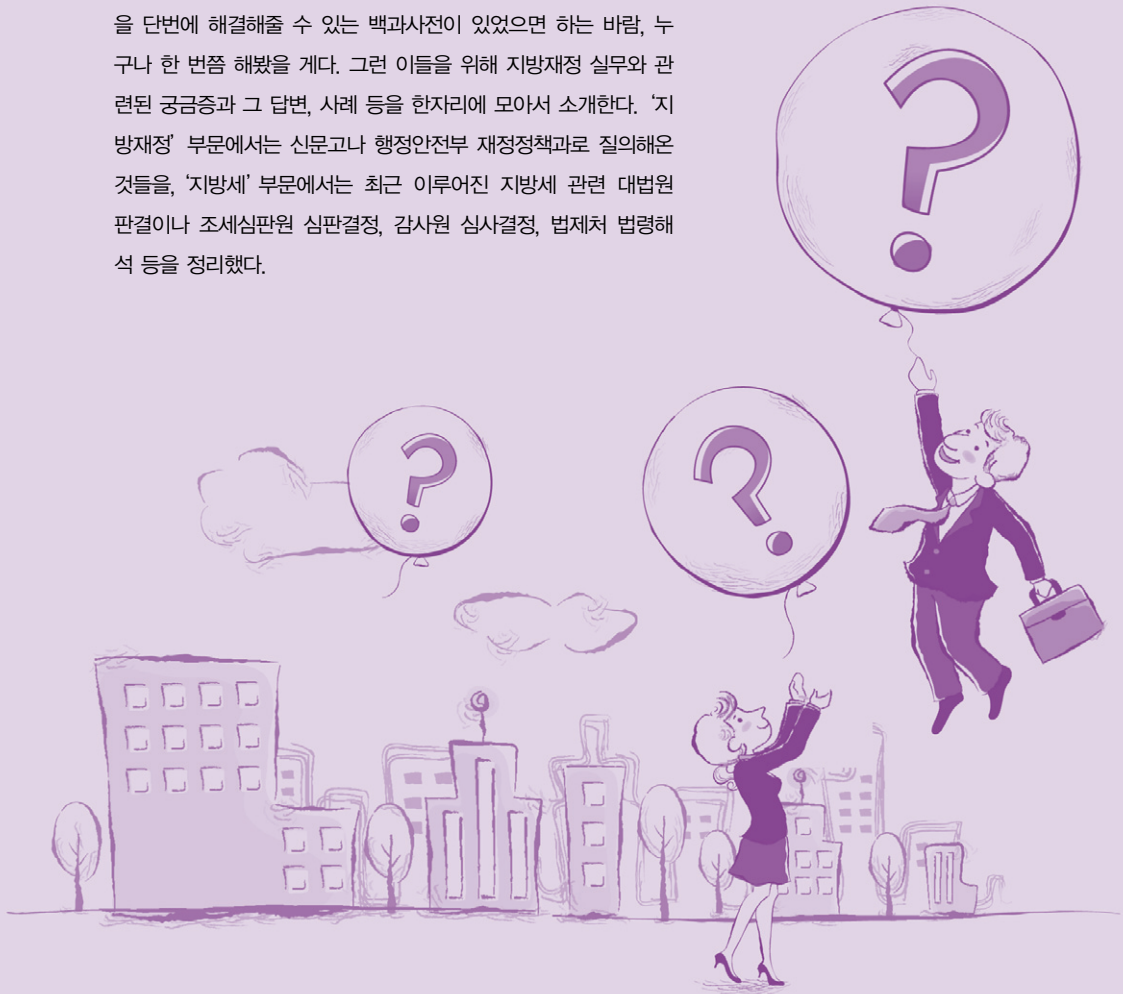


지방재정 실무 백과사전

지방재정 관련 실무를 보다보면 간혹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 절차, 사례 등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신설·폐지되거나 바뀌는 법규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럴 때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다. 그런 이들을 위해 지방재정 실무와 관련된 궁금증과 그 답변, 사례 등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한다. '지방재정' 부문에서는 신문고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 '지방세' 부문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감사원 심사결정,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정리했다.



‘지방재정’ 공금증 해결

글 _ 명 삼 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Question

특정업무수당(여론·동향공무원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론업무 담당은 있지만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이 업무(여론·동향)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여 수행중에 있어서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수가 부족한 현실을 볼때 한 사람이 여론·동향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한 사람이 동향·여론 업무를 전담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한지?

Answer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 훈령 제206호) 제4조에 따른 [별표 2] 업무추진비 중 여론·동향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별도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여론·동향업무의 사무분장을 여러 명으로 지정하여 편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여건 상 공무원 한 명이 여론·동향을 전담하면서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 특

정업무경비는 지급 가능할 것이다. 이 운영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무 경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소급적용은 '2008년도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집' 를 참조하면 된다.

Question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에 위원회 구성 시 상임위원회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지방의회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계도 기관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지? 만약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 정도가 되면 6개월 기간동안 기관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12. 2. 28 행정안전부훈령 제206호) 제4조에 따른 [별표 1] 지방의회관련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예산계상이 불가능하다.

Question

마을회관 운영비

이장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마을회관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마을회관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관련된 건 조례 등으로 규정이 되어있으나,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마을회의 소유로 있는 마을회관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해줘도 되는지?

Answer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12. 2. 28 행정안전부훈령 제206호) 제4조 제3호 [별표 3] 민간이전 경비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원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회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Question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시행

일몰제가 2012년부터 시행이라면 일몰제의 근거자료인 사업별 성과관리(평가)가 2012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12년, 2013년, 2014년 성과관리(평가)를 실시하여 2015년부터 일몰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판단이 맞는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책자 49쪽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평가 결과 점수와 50쪽의 성과평가 체크리스트의 예시에 기재된 사업 및 계획(15), 관리(25), 성과(60)의 점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즉, 50쪽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보조사업의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있다. 49쪽의 평가결과 점수는 어디에 활용하는 것인지, 별도 관리 자료인지? 또한 50쪽의 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에는 성과평가 체크리스트(예시) 왼쪽에 있는 구분의 사업 및 계획(15), 관리(25), 성과(60)가 일부 부적합한 구분이라고 여겨진다. 자치단체에서 구분의 내용과 배점, 질문사항을 자율적으로 변경해 성과평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nswer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11. 8. 1 행정안전부훈령 제196호)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2012년부

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일몰제는 3년 후인 2015년 이후 예산편성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의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 보조사업 성과평가운영의 성과평가 체크리스트(예시)에서 성과(60)는 위 성과관리카드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배점하면 된다. 아울러 성과평가 체크리스트의 배점별 세부 평가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Question

보조금 지원(사업)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을 신청하여 가구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정부보조금 외 민간 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Answer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사업인 그린홈 사업을 자치단체가 민간인의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원할 때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거주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글 _ 오 정 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Case 01

대도시내의 본점을 신·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법원 2012.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그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 입법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한 것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Case 02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인 법인 분할시 포괄승계의 예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726 판결)

등록세 중과세 제외요건에 관한 규정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는 제한적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분할법인의 레미콘 등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원고가 그 사업부문의 자산을 승계하면서 32개 사업장 부지 중 이 사건 토지 등 일부 사업장 부지만 승계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 부지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이 아님에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Case 03

국민연금공단 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대상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8113 판결)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문언상 별도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과 제3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을 두면서 명시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89조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같은 조문에서 두고 있는 바, 전자는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지만 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면에 후자는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감규정은 원고가 국민연금법 제25조 제7호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별도로 지방세 과세 기준일 현재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Case 04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감사원 감심 제93호, 2012. 6. 21 결정)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로부터 다시 명의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 유·무상 취득, 소유권의 보존,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이외의 등기 비용은 매 건당 3,00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당초 원인무효인 청구외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라 하더라도, 이는 말소등기와 달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Case 05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 경매 시 배당대상

(대법원 2012.7. 12 선고 2010두5172 판결)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

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된다.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Case 06

취득세 자신신고납부시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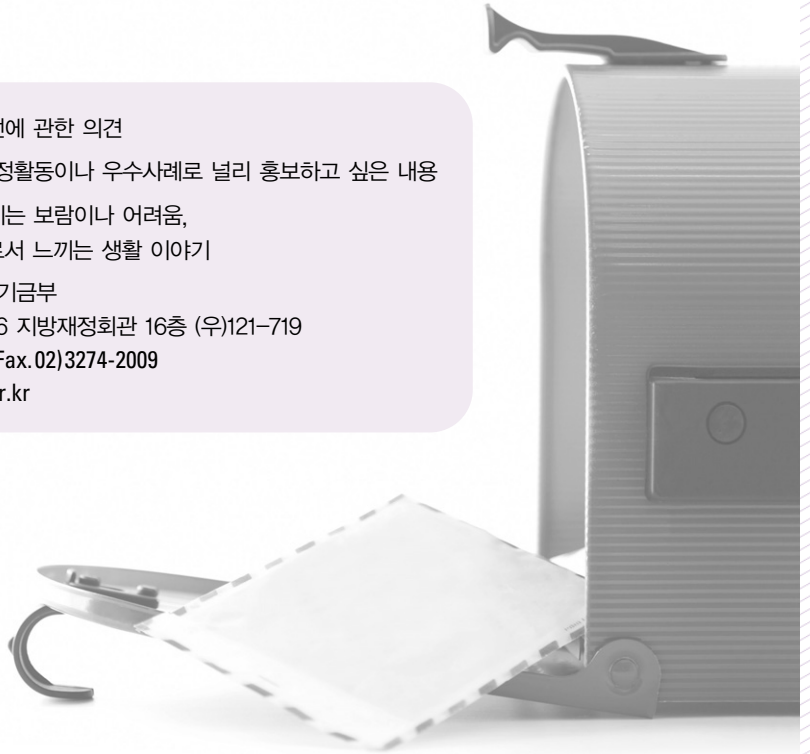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759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수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초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지방재정’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격월간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 교양지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 지방재정 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에 세 이 |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 이야기
- 보내실 곳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16층 (우)121-719
Tel. 02)3274-2027 / Fax. 02)3274-2009
E-mail. myposse@lofa.or.kr



편집 후기 11*12

여섯번째 이야기
Local Finance Magazine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12월. 한 해의 끝자락. 이미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 좀더 잘할 걸 하는 후회, 좀더 잘해 줄 걸 하는 회한 등이 찌꺼기처럼 마음에 남는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이미 시간은 흘러가버린 것을... 흐르는 시간 속에 아쉬움과 후회, 회한은 떠내려 보내자. 그리고 하늘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지난 한해 지방재정을 아끼고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마음 깊이 고이 담아둔다.



“예비 재정인의 시각”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 응모자격 |

-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단독 및 공동연구(3인 이내) 가능
※ 공동연구 시 모든 참가자가 공모자격을 갖추어야 함

| 연구주제 |

- 자치단체 예산, 지방계약, 공기업 혁신 등 지방재정 관련 자유 주제

| 특 전 |

- 채택 시 우리회가 발행하는 「지방재정」지에 원고 게재 및 원고료 지급
- 기고된 원고는 우리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재정인' 후보로 자동 등록

| 제출방법 |

- 한글 문서 A4 15매 내외 서술형 논문 • 온라인 접수(myposse@lofa.or.kr)

| 접수안내 |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Tel.02-3274-2027)